

# 순천대학교 인재개발본부 운영규정

제정 2019. 7. 17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인재개발본부(이하 “개발본부”라 한다)의 직무,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개발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진로 및 경력개발 등 계획 수립
2. 취업능력 개발 지원
3. 취업교과목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
4. 학생 취업 추천
5. 취업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
6. 취업 정보 제공 및 지원
7. 취업 정보 및 통계 관리

**제3조(조직)** ① 개발본부에는 본부장을 두며, 하부조직으로 취업지원실을 둔다.

②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개발본부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
**제4조(운영위원회)** ① 개발본부에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위원장은 본부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본부장, 교무부처장, 학생부처장, 기획부처장, 산학협력단부단장, 취업지원실장과 전임교원 중에서 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5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개발본부의 운영의 기본 계획
2. 규정의 개정·폐지에 관한 사항
3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위원회 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(재정)** 개발본부의 재정은 대학회계 및 그밖의 재원으로 한다.

**제8조(기타)** 개발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<2019. 7. 17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**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순천대학교인재개발원규정은 폐지한다.